

서울특별시의회  
제319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 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제 안 설 명



2023. 6. 23.

서울특별시의회  
아이수루의원 (더불어민주당, 비례)

□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아이수루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 
뜻 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은 세종문화회관의

대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 
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 조례를  
현실에 맞게 서울특별시 규칙이 아닌  
세종문화회관의 규정 및 내규로 정하도록 하고자  
발의되었습니다.

□ 세종문화회관 대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

동 조례안 제4조(법인의 사업) 중  
세종문화회관의 운영(제1호)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 
서울시 규칙이 아닌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 
규정 및 내규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.

- 또한 이미 세종문화회관은  
대관 규정과 공연장 대관 내규를 마련해  
공정한 대관 심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므로  
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  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 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 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 
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 
감사합니다.